

소속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알림

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무자에게 휴게시간 부여 및 보다 나은 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소속 우편취급국의 점심시간 휴무 운영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시행일	대상 우체국	비고
'23. 1.2.(월)	○ 서울서부지방법원 우체국 (점심시간 12:00~13:00)	시행 예정
'23. 2. 1.(수)	○ 성산유원 취급국 (점심시간 12:00~13:00)	추가 시행

아울러, 점심시간 동안 긴급한 용무가 있으신 고객님께서서는 인근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라며, 고객님의 협조와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.

서울 마 포 우 체 국 장